

2004년 8월 3일 조간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보 도 자 료

노동부 임금정책과

과	장	임	무	송
담당사무관		송	민	선

T E L : 503-9732/3

E-MAIL : praxis1@molab.go.kr

FAX : 503-6692

▶ 2004. 8. 2 배포

▶ 총 3 쪽 (사진 없음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‘04.9.1~’05.8.31 최저임금,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원안대로 시간급 2,840원으로 결정 고시

- 전년대비 13.1%인상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, 125만명 근로자 혜택 예상

- 노동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시간급 2,840원 (일급 8시간 기준 22,720원)으로 최종 결정하여 8월 3일자로 고시함
 - 이는 작년에 비해 13.1% 인상된 것으로,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8.8%에 해당하는 1,245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
-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측 최종안(시간급 2,840원)을 「‘04.9.1~’05.8.31 적용 최저임금안」으로 의결하여 노동부에 제출한 바 있음
 - 이후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7월 5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,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노사단체로부터 한 건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음

-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3.1%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고, 영향률(8.8%, 1,245천명)도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후 4번째로 높은 수준으로서
 - 6월말 현재 100인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인상률이 5.4%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임금격차 완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
- 노동부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이 산업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
 - 9월부터 한 달간 홍보·제도기간을 거쳐, 『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 신고기간(10.1~10.31)』 및 『최저임금 이행실태 집중 점검기간(10.1~11.30)』을 설정·운영할 계획임
- 한편, 올해 7월부터 1,000인이상 사업장 등에서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용·용역 등 최저임금 지대에 있는 취약근로자들도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월 임금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
 -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금보전원칙에 따라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, 노동부는 임·단협 과정에서 이 원칙이 준수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 나갈 것임

붙임 : 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

< 붙임 >

연도별 최저임금액 현황

(단위 : 원, %, 천명)

연 도	적 용 대 상	최저임금액	인상률	적용대상 근로자수	수 해 근로자수	영향률
1988	10인 이상 제조업	(1그룹)시간급 462.50 일 급 3,700 (2그룹)시간급 487.50 일 급 3,900		2,267	94	4.2
1989	제조업, 광업, 건설업 (상시근로자 10인 이상)	시간급 600 일 급 4,800	평 균 26.3 1그룹 29.7 2그룹 23.1	3,053	328	10.7
1990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 이상)	시간급 690 일 급 5,520	15.0	4,386	187	4.3
1991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 이상)	시간급 820 일 급 6,560	18.8	4,556	393	8.6
1992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 이상)	시간급 925 일 급 7,400	12.8	4,620	392	8.5
1993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 이상)	시간급 1,005 일 급 8,040	8.6	5,045	228	4.5
'94.1~ '94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 이상)	시간급 1,085 일 급 8,680	8.0	4,916	102	2.1
'94.9~ '95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 이상)	시간급 1,170 일 급 9,360	7.8	4,864	103	2.1
'95.9~ '96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 이상)	시간급 1,275 일 급 10,200	9.0	5,381	103	1.9
'96.9~ '97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 이상)	시간급 1,400 일 급 11,200	9.8	5,240	127	2.4
'97.9~ '98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 이상)	시간급 1,485 일 급 11,880	6.1	5,350	124	2.3
'98.9~ '99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10인 이상)	시간급 1,525 일 급 12,200	2.7	5,136	23	0.4
'99.9~ '00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5인 이상)	시간급 1,600 일 급 12,800	4.9	5,031	54	1.1
'00.9~ '01.8	전 산 업 (상시근로자 5인 이상)	시간급 1,865 일 급 14,920	16.6	6,692	141	2.1
'01.9~ '02.8	전 산 업 (모든 사업장)	시간급 2,100 일 급 16,800	12.6	7,152	201	2.8
'02.9~ '03.8	전 산 업 (모든 사업장)	시간급 2,275 일 급 18,200	8.3	상용 7,421	215	2.9
				전체 13,216	849	6.4
'03.9~ '04.8	전 산 업 (모든 사업장)	시간급 2,510 일 급 20,080	10.3	상용 7,971	342	4.3
				전체 13,631	1,035	7.6
'04.9~ '05.8	전 산 업 (모든 사업장)	시간급 2,840 일 급 22,720	13.1	상용 7,985	530	6.6
				전체 14,149	1,245	8.8

주 : 1. 영향률=수해근로자 수 / 적용대상 근로자수

2. 전체 근로자 기준 영향률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활동부가조사시 산정한 상용·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추정한 수치임

자료 : 최저임금위원회, 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 년호